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홍지광 의원)

의안 번호	26-39
----------	-------

발의년월일: 2026. 4. .

발의자: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한선미
의원(9인)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첨부)

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2026. 4. 1. ~ 4.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 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훈련수당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1항제5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7. 1. ~2031.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구분	○						
	소계(a)						
세입	○구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소계(b)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 총 비용(a-b)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 산출근거: 근로장애인 30명 월 100천원/ 훈련장애인 10명 월50천원 산정시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소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자체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수입	지방세수입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세외수입 등						

5. 덧붙이는 의견: 사회복지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보건복지부)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이수경
연락처	02-3183-1683